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44
----------	-----

2017.07.14.(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인수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7년 6월 26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6월 28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7월 11일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인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시 조기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도지사 책무와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사 소독 등 가축소유자 책무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

- 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기발견·신고체계 구축 등 관리대책 수립
(안 제6조)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안 제7조)
-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방역을 위한 가축방역지원단의 설치(안 제8조)
- 가축방역 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상(안 제9조)
- 가축방역 사업의 분석과 평가(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산업경제전문위원 : 유지영)

-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은 최근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에 많은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시 조기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2.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가축방역지원단”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가축방역지원단원의 조직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5. “축산관계시설”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 설비 및 실시를 하여야 하는 자가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 가축생산 과정에 필요한 물품·생산물·부산물에 대한 처리 또는 유통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소유자 등의 책무) ① 가축소유자나 가축사육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외부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와 그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충청북도의 가축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축산계열화 사업자는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사료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농가에 대하여 방역교육,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등을 지원할 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2. 가축소유자는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방역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축산관계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6. 가축방역지원단원의 교육 및 육성
 7. 가축의 살처분·매몰 등에 따른 환경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8. 가축의 살처분에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9. 가축 밀집사육 지역의 방역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 ② 가축 및 축산관계 시설의 소유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방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1. 방역시설 운영 및 개선사항
 2. 가축의 검사, 투약, 소독(약욕), 살처분에 관한 사항
 3. 출입자 및 출입차량의 소독관리
 4.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매몰지 확보 방안
 5. 동물복지 및 안전한 가축 생산을 위한 대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 응급지원, 손실보상,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보상
2. 가축전염병 방역활동에 참여하는 가축방역지원단원에 대한 보상
3.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일정기간 가축사육 제한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8조(가축방역지원단의 설치)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찰 및 효율적인 가축방역을 위하여 가축방역지원단을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가축방역지원단원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이 실시하는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지원단원의 위촉 절차, 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④ 가축방역지원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 및 예방 홍보 활동
2. 재난성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참여
3.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근무
4. 그 밖의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도지사, 시장·군수가 부여하는 임무

⑤ 가축방역지원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가축방역지원단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근무해태, 회피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가축방역지원단원으로서 사회적 지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가축방역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가축방역 활동이 우수한 단체·법인 또는 개인

2.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초로 신고한 자(가축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제외한다)

3. 가축방역 활동이 우수한 시·군

4. 가축방역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유공 공무원

②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등은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0조(분석·평가) 도지사는 매년 시·군의 가축방역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축방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제62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방지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

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63조(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① 제44조제1항, 제46조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64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 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 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게곡열, 럽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캐슬병 및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7.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8.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9.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3.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의 소유자

4.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5.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② 제21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제6항, 제6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

4.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제3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이 2회 이상 발생한 가축의 소유자등

5. 「축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등록·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한 가축의 소유자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생계안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2. 제20조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지원단원 및 관계 공무원

3.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지원단원 및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치료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치료 요청의 절차 및 방법,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3항에 따라 축산관련단체가 공동으로 가축방역을 하는 경우에 그 축산관련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수행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가. 가축방역지원단원에 대한 보상(안 제7조제2호)

- 가축전염병 방역활동에 참여하는 가축방역지원단원에 대한 교육과 방역 활동에 따른 비용

나.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소유자 보상 지원(안 제7조제3호)

- 제1종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특정지역에 대해 일정기간 가축사육 제한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함에 따른 비용

3. 관련조문

- 안 제7조(지원사업) 참고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가축사육제한에 따른 가축소유자 보상과 지원 가축방역지원단원 활동비 지원

나. 비용추계 : 24억원(도비 7.2, 시군비 16.8)

- 겨울철 사육밀도 조절을 위한 사육제한 : 14억원
 - 가축 사육제한 보상 : $100만수 \times 1,000원 \times 70\% \times 2회 = 14억원$
 - ※ 종란 폐기까지 보상할 경우 : $200만개 \times 500원 \times 50\% = 5억원$
- 가축방역지원단원 활동비 : 10억원
 - $100명 \times 100일 \times 100,000원 = 10억원$

다. 추 계 결 과 : 17년 ~ 21년까지 총 12,000백만원(도비 3,600백만원) 정도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30%, 시군비 7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세 출	12,000	2,400	2,400	2,400	2,400	2,400
가축방역지원단원 활동비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축 사육제한 보상	7,000	1,400	1,400	1,400	1,400	1,400

6. 작성자 : 농정국 축산과장 김창섭(☎ 220-3710)

☐ 사업별 비용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계	12,000	2,400	2,400	2,400	2,400	2,400
	도비	3,600	720	720	720	720	720
	시군비	8,400	1,680	1,680	1,680	1,680	1,680
가축방역 지원단원 운영	계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도비 (30%)	1,500	300	300	300	300	300
	시군비 (70%)	3,500	700	700	700	700	700
가축사육 제한 보상	계	7,000	1,400	1,400	1,400	1,400	1,400
	도비 (30%)	2,100	420	420	420	420	420
	시군비 (70%)	4,900	980	980	980	980	980